<u>변경보고서</u>

1. 대상편드

- 1) 하나UBS인Best연금증권투자신탁(제1호)[국공채]
- 2) 하나UBS인Best연금증권투자신탁(제1호)[주식]
- 3) 하나UBS인Best연금증권투자신탁(제1호)[주식혼합]
- 4) 하나UBS인Best연금증권투자신탁(제1호)[채권]

2. 변경내용 : 연금저축계좌 도입관련 변경

3. 변경적용일 : 2013년 4월 1일

4. 대비표 <u>집합투자규약</u>

| 구 분 | 현 행 | 변 경(안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제 2 조 (용어의 정의) | 8. "전환"이라 함은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제 28 조의 2 제 1 항 각호의 투자신탁내에서 하나의 투자신탁 수익증권 전부를 환매하고 그 환매대금으로 다른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. 9. "투자신탁계약의 이전" 10. "연금지급기준일" 11. "약정연금지급일" 12. "연금지급개시일" | ~ <u>수익증권을 환매하고</u> 그 환매대금으로 다른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. 다만, 판매사의 사정에 따라 일부 전환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. 9. <u>(삭제)</u> 10. <u>(삭제)</u> 11. <u>(삭제)</u> |
| 제 2 조의 2 (투자신탁의 가입제한 등) | 이 투자신탁의 가입자격은 만 18 세 이상의 거주자에 한한다. | 이 투자신탁의 가입자격은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"연금저축계좌"의 가입자에 한한다. |
| 제 2 조의 3 (세제혜택 등) | 수익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, 세제혜택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관련법령(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)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| (삭제) |
| 제 25 조의 2 (투자방법등) | ①투자자는 분기마다 300 만원의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할 수 있다. (중략) | (삭제) |
| 제 25 조의 3 (투자신탁의 투자기간등) | ①이 투자신탁의 투자기간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통산한 기간으로 한다. (중략) | <u>(삭제)</u> |

| 제 28 조의 3 (투자신탁계약의 이전) | ①수익자는 투자기간중 판매회사에 대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투자신탁계약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. (중략) | <u>(삭제)</u>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제 28 조의 4 (연금의 지급개시) | ①판매회사는 연금지급개시일에 수익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지급을 개시한다. | (삭제) |
| 제 28 조의 5 (연금의 지급방법) | ①연금의 지급은 "좌수분할식"에 의하여 지급한다. (중략) | (삭제) |
| 제 28 조의 6 (투자신탁계약의 중도해지) | ①수익자가 적립기간 만료전에 투자재산을 인출하거나 적립기간 만료후 연금지급외의 형태로 투자재산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처리한다. | (삭제) |
| 제 52 조 (수익증권의 통장거래) |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"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"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. |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"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"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. |
| 부칙 | (우측 신설) | 제1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3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종전 가입자에 대한 경과조치) ①2013년2월28일 이전에 "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"에 따라 이투자신탁에 가입하거나 이투자신탁으로 이전한 수익자의 당해투자신탁 수익증권 계좌는 소득세법시행령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로 본다. ②제1항에 따른 수익자는 연1,800만원(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등을 포함하여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합계액을 말한다)을 한도로판매회사와 약정한 금액 이내에서납입할 수 있다. 다만, 연금수령개시이후에는 추가 납입할 수 없다. ③제1항에 따른 수익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계좌에서 자금을인출하는 경우(이하 "연금수령"이라하며,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"연금외수령"이라한다)에는 소득세법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소득으로과세한다. |

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

- 2.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. 다만, 이연퇴직소득이 계좌에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3. 과세기간 개시일(연금수령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일로 한다)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(이하 "연금수령한도"라 한다) 이내에서 인출할 것

| 연금계좌의 평가액 | | 120 |
|---------------|-------|-----|
| (11 - 연금수령연차) | - x - | 100 |

- * "연금수령연차"란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,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계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기산연차는 6년차부터 적용한다.
- ④제1항에 따른 수익자가 연금외수령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. 다만,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.
- ③제1항에 따른 수익자가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종전 조세특례제한법(법률제11486호) 제86조의2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.
- ⑥제1항에 따른 수익자가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계좌를 해지되는 경우 종전 조세특례제한법(법률 제11486호) 제86조의2에 따라 매년 납입한 금액(400만원을 한도로 한다)의 누계액의 2%를 해지가산세로 추징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1. 가입자의 사망

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2. 천재.지변 |
| 3. 가입자의 퇴직 |
| 4. 가입자의 해외이주 |
| 5. 사업장의 폐업 |
| 6. 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|
|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·질병의 발생 |
| 7. 회사의 영업의 정지, |
| 영업인가·허가의 취소, 해산결의 또는 |
| 파산선고 |
| ⑦제1항에 따른 수익자 중 2012년 |
|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자가 |
| 제6항제2호부터제7호까지의 사유로 |
| 해지하는 경우 종전 |
| 조세특례제한법(법률 제11486호) |
| 제86조의2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|
| |
|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|
| 수익증권 일부에 대한 환매 및 전환을 |
| 청구할 수 없다. |

투자설명서 / 간이투자설명서

| 구 분 | 현 행 | 변 경(안) |
|--|---|--|
| 연금저축 핵심 설명서 | 내용 생략 | <u>(삭제)</u> |
| 제 1 부 2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| 바.(우측 신설) | 바. 가입자격: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"연금저축계좌"의 가입자" |
| 제 2 부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| 나. 전환형 구조 (단서조항 우측 신설) | 나. 전환형 구조 <u>또한 2013 년 2 월 28 일 이전에</u> <u>"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"에 따라 이</u> <u>투자신탁에 가입하거나 이</u> <u>투자신탁으로 이전한 수익자는 일부</u> <u>환매 및 일부 전환이 제한될 수</u> <u>있습니다.</u> |
| 제 2 부 11. 매입, 환매, 전환, 이전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| 나. 환매 (1) 수익증권의 환매 (단서조항 우측 신설) 라. 집합투자기구계약의 이전 | 나. 환매 (1) 수익증권의 환매 다만, 2013년2월28일 이전에 "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"에 따라 이 투자신탁에 가입하거나 이 투자신탁으로 이전한 수익자는 일부 환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 라. 집합투자기구계약의 이전 (이전 관련 내용 삭제) |
| 제 2 부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| 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| 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(전환/이전 수수료 및 해지가산세 삭제) |

| 사항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
| 제 2 부 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| 나. 과세 (2) 세제관련 사항 (연금투자신탁에 관한 사항) | 나. 과세 (2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(종전 연금저축편드에 대한 과세 부분 삭제 및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과세 부분 추가) |
| 별첨 | [연금저축투자신탁에 관한 사항] (내용 생략) | [연금저축투자신탁에 관한 사항] (삭제) |